

□ 변경 대비표

신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

변경시행일: 2024년 04월 18일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

2 상환금 지급 관련 규약 문구 명확화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<p>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[종류 C-p 수익증권] -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- (선후, 후취) 판매수수료 부과여부: 해당사항 없음</p> <p>[종류 C-pe 수익증권] -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- (선후, 후취) 판매수수료 부과여부: 해당사항 없음</p> <p>[종류 C-r 수익증권] 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- (선후, 후취) 판매수수료 부과여부: 해당사항 없음</p> <p>[종류 C-re 수익증권] 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 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- (선후, 후취) 판매수수료 부과여부: 해당사항 없음</p>
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p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9. <생략> <u><신설></u></p> <p>10. ~ 11. <생략></p>	<p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9. <현행과 같음></p> <p>10. 종류C-p 수익증권</p> <p>11. 종류C-pe 수익증권</p> <p>12. 종류C-r 수익증권</p> <p>13. 종류C-re 수익증권</p> <p>14. ~ 15. <현행과 같음></p>
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37조 (보수)	<p>제37조 (보수) ③ <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제37조 (보수) ③ <현행과 같음></p> <p>10. 종류 C-p 수익증권</p> <p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9.000]</p> <p>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9.000]</p> <p>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600]</p> <p>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</p> <p>11. 종류 C-pe 수익증권</p> <p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9.000]</p> <p>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4.500]</p> <p>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600]</p> <p>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</p> <p>12. 종류 C-r 수익증권</p> <p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9.000]</p> <p>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8.100]</p> <p>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600]</p> <p>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</p> <p>13. 종류 C-re 수익증권</p> <p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9.000]</p> <p>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4.050]</p> <p>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600]</p> <p>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</p>
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38조 (판매수수료)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<생략></p> <p>3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-e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<신설> 종류 C-w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 : 없음</p>	<p>제38조 (판매수수료)</p> 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-e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<u>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C-pe 수익증권, 종류 C-r 수익증권, 종류 C-re 수익증권</u>, 종류 C-w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 : 없음</p>
<p>2. 상환금 지급 관련 규약 문구 명확화: 제33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p> <p>제33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없이 판매사를 경유하여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(이하 "상환금 등"이라 한다)을 수익자에게 <u>지급하도록 한다</u>.</p> <p>② ~ ③ <생략></p>	<p>제33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없이 판매사를 경유하여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(이하 "상환금 등"이라 한다)을 수익자에게 <u>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, 판매사는 상환금 등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</u>.</p> <p>② ~ ③ <현행과 같음></p>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
-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간접
- 3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사항 반영
- 4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- 5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
-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	<p>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u><신설></u></p>	<p>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종류C-p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종류C-p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종류C-r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종류C-re)</p>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	<p>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u><신설></u></p>	<p>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종류C-p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종류C-p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종류C-r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종류C-re)</p>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u><신설></u></p>	<p>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-p)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) 신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-pe)(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) 신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-r)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) 신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C-re)(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)</p>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<속속></p> <p>나. 종류별 구조</p> <p>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나. 종류별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<u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]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<u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]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</p> <p><u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]</u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</p> <p><u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]</u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</p>	<p>나. 종류별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<u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]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<u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]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</p> <p><u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]</u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</p> <p><u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]</u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</p>
<p>(2)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(2)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<u>[기타]</u></p> <p>- 개인연금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 <p>- 퇴직연금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PR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	<p>(2)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<u>[기타]</u></p> <p>- 개인연금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 <p>- 퇴직연금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PR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
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</p> <p>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</p>	<p>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</p> <p>가. 매입</p> <p>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<신설></p>	<p>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</p> <p>가. 매입</p> <p>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]</p> <p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]</p> <p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</p> <p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]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</p> <p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]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</p>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</p> <p><신설>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</p> <p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]</p> <p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]</p> <p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</p> <p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]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</p> <p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]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</p>
<p>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p><신설></p>	<p>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,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 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: 없음 	<p>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,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 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: 없음
<p>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<신설></p>	<p>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)] -집합투자업자보수: 0.900 -판매회사보수: 0.900 -신탁업자보수: 0.060 -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30 <p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집합투자업자보수: 0.900 -판매회사보수: 0.450 -신탁업자보수: 0.060 -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30 <p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집합투자업자보수: 0.900 -판매회사보수: 0.810 -신탁업자보수: 0.060 -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30 <p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집합투자업자보수: 0.900 -판매회사보수: 0.405 -신탁업자보수: 0.060 -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30 	<p>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)] -집합투자업자보수: 0.900 -판매회사보수: 0.900 -신탁업자보수: 0.060 -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30 <p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집합투자업자보수: 0.900 -판매회사보수: 0.450 -신탁업자보수: 0.060 -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30 <p>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집합투자업자보수: 0.900 -판매회사보수: 0.810 -신탁업자보수: 0.060 -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30 <p>[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집합투자업자보수: 0.900 -판매회사보수: 0.405 -신탁업자보수: 0.060 -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0.030
		<1,000만원 투자 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
	<신설>	소수로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종류C-p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,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r),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re)
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<u><신설></u></p>	<p>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)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p> <p>A. 세액공제: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. - 단,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.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>B. 과세 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</p> <p>C.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은 연간 1,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. 연금소득이 1,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
<p>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<계속></p>	<p><u><신설></u></p>	<p>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)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(연금수령 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 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과세 제외금액*을 인출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.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* 과세제외금액: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,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,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</p> <p>[연금저축 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납입요건, 수령요건, 세액공제, 연금수령 시 과세, 분리과세한도, 연금외수령 시 과세, 해지가산세,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,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, 연금계좌 승계 내용 신설</p>
<p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개선: 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: 36.66%, 1등급</p>	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: 29.73%, 1등급</p>
<p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개선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최근연황개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p>
<p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개선: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최근연황개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 및 2024년03월31일)</p>
<p>3.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</p>	<p>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<u><신설></u></p>	<p>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라. 중도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<u><표 신설></u></p>
<p>4.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: 투자설명서 전반</p>	<p>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p>
<p>5.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최근연황개선(기준일: 2024년03월31일)</p>
<p>6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	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-최근연황개선(기준일: 2024년03월31일)</p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
-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
- 3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-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[요약정보] 과세	과세 <신설>	과세 - 토직연금제도의 세제(토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): 이 투자신탁은 토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):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종류 C-p, C-pe, C-r, C-re 수익증권 신설: [요약정보] 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<신설>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- 개인연금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- 토직연금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토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: 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- 최근연황갱신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 및 2024년03월31일)
3.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: 간이투자설명서 전반	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4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- 최근연황갱신(기준일: 2024년03월31일)